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3월 2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홍**	홍** 1983-06-15	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강변길	무단전출
윤**	윤** 1966-11-10	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왕길	무단전출
윤**	최** 1967-06-24	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왕길	무단전출
윤**	윤** 2002-12-03	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왕길	무단전출
윤**	윤** 1997-05-30	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왕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7-01-13	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괴일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이 수정 문의전화 : 033-660-3533)

2016년 03월 14일

성산면장

